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447호(號) 1928(昭和 2)년 6월 26일 화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248호(號)

1927(昭和 2)년 조선총독부고시 제281호(號) 조선국유철도(朝鮮國有鐵道) 경유(經由) 조선(朝鮮) 내(內) 사설철도회사선(私設鐵道會社線), 철도성선(鐵道省線) 간(間) 화물연대운수규칙(貨物連帶運輸規則) 중(中) 1928(昭和 3)년 7월 1일부터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28(昭和 3)년 6월 26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야마나시 한조(山梨半造)

제3조(條) 아래[左]에 게시(揭示)한 화물(貨物)은 철도에서 특히 승낙(承諾)한 경우에만 그 운송(運送)을 인수(引受)함.

조선국유철도(朝鮮國有鐵道)가 정(定)한 급외품(級外品: 양철[葉鐵]로 포장[包裝]한 목제상[木製箱]에 수용[收容]된 안전성냥[安全燐寸], 아울러 조선국유철도[朝鮮國有鐵道]가 정[定]한 포장을 행한 석유류[石油類]를 제[除]함 및 조선(朝鮮) 내(內) 사설철도회사(私設鐵道會社) 광궤선(廣軌線) 발(發) 또는 착(著)에 있어서는 1개(箇)의 중량(重量) 3톤(噸·ton), 용적(容積) 3백(百) 입방척(立方尺) 또는 길이[長]는 소화물급(小貨物扱)에 있어서는 14척(尺), 차급(車扱)에 있어서는 30척(尺)을 초과(超過)한 것 및 동(同) 협궤선(狹軌線) 발(發) 또는 착(著) 소화물급(小貨物扱)에 있어서는 1개(箇)의 길이[長] 14척(尺), 중량(重量) 1톤(噸·ton), 용적(容積) 백(百) 입방척(立方尺), 차급(車扱: 조선국유철도선 내를 소화물급으로 연대한 것을 포함함)에 있어서는 1개(箇)의 길이[長] 30척(尺: 조선국유철도 내를 소화물급으로 연대한 것은 18척), 중량(重量) 3톤(噸·ton), 용적(容積) 3백(百) 입방척(立方尺)을 초과(超過)한 것.